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296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철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 주 문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2015. 5. 21. 채무자 회사의 C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금액 2억 9,700만 원의 신용보증계약을(보증기한 2021. 11. 12.까지), 2020. 6. 1. 채무자 회사의 D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의 신용보증계약을(보증기한 2021. 5. 28.까지) 각 체결하였다.
- ② 채무자 회사는 2021. 5. 29. D은행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2021. 6. 22. C은행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각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1. 9. 23. D은행에 289,009,363원을, 2021. 11. 12. C은행에 272,128,112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다.
- ③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2020. 6. 1.자 신용보증계약에는 ‘채무자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1.5%)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1,370,340원이다[=신용보증금액 285,000,000원 × 117일/365일(2021. 5. 29.부터 2021. 9. 22.까지) × 1.5%].
- ④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차전18317호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 합계 565,061,279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19. 565,061,279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22. 3. 22. 확정되었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지적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갑 제6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인 2021. 3. 2.부터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입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5. 29.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③ 결국 원고가 D은행 및 C은행에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채무자 회사의 사해행위

### 가.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는 2021. 3. 15. 채무자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3. 15. 무렵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내역                      | 금액(원)         |
|----------|-------------------------|---------------|
| 적극<br>재산 | 이천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        | 4,938,486,630 |
|          | 이천시 G 토지 중 372분의 91 지분  |               |
|          | 이천시 H 토지 중 742분의 349 지분 |               |
|          | 이천시 I 토지 중 478분의 445 지분 |               |
|          | 이천시 J 토지                |               |
| 소극<br>재산 | E조합                     | 3,573,385,293 |
|          | K                       | 381,037,808   |
|          | 이천세무서                   | 59,953,270    |
|          | 중소벤처진흥공단                | 313,999,173   |
|          | 원고                      | 565,061,279   |
|          | 주식회사 L                  | 50,000,000    |
|          | 국민건강보험                  | 30,348,790    |
|          | M 외 4인                  | 121,648,650   |
|          | 피고(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기준) | 960,000,000   |
|          | 합 계                     | 6,055,434,263 |

## 나.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곧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3.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채무 초과 상태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N의 증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미 채무자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률, 판사 서영우, 판사 여재영

별지